

미즈시마항의 새로운 항내교통관제 도입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미즈시마항 항내 항로에 다음과 같이 AIS (선박 자동식별장치) 를 활용한 새로운 항내교통관제가 도입됩니다.

1.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선박 길이에 따른 선박의 항행관제)

일정 조건 하에 항장이 인정하고 지시한 관제대상선은 출항신호(O) 시 또는 입항신호(I) 시에도 항내 항로에서 항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관제선이 미즈시마 항로에 입항하기 전에 관제대상선을 출항시키는 관제 (입항신호(I) 시의 출항관제)

일정 조건 하에 항장이 인정하고 지시한 관제대상선은 행선지가 시모쓰이세토 방면 또는 검역요박지 방면인 경우에 한해 입항신호(I) 시에도 항내 항로를 출항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제선으로부터의 사전 통보】

새로운 항내교통관제 도입에 따라 항칙법 제3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항내 항로를 항행해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관제선은 입출항 예정의 전일 정오까지 미즈시마항 항장(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경유)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단,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거대선 등으로부터의 미즈시마 항로 항행에 관한 해상보안청 장관(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경유)을 수신자로 하는 통보] 와 함께 해당 선박이 정박하거나 정박하고자 하는 미즈시마항의 계선시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사전 통보는 필요없습니다.

미즈시마항 주변 해역 약도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선박 길이에 따른 선박의 항행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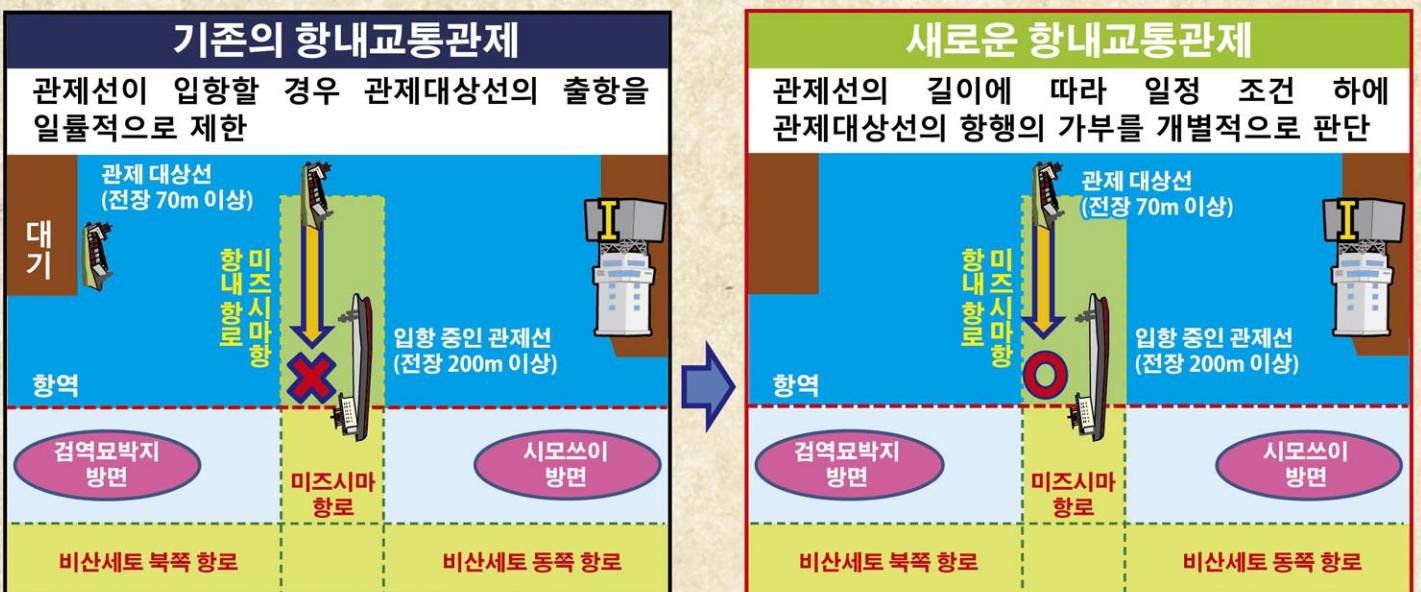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관제선(200m 이상의 선박)이 항내 항로를 항행할 경우, 관제대상선(70m 이상 200m 미만의 선박)의 항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새로운 항내교통관제는 AIS 정보를 활용해 일정 조건 하에 항장이 인정하고 지시한 관제대상선은 출항신호(O) 시에도 항내 항로에 입항하거나 또는 입항신호(I) 시에도 항내 항로를 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림1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O 신호의 경우】



그림 2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I 신호의 경우】



※ 1 관 제 선 : 관제 신호가 입항신호(I) 또는 출항신호(O)인 경우에 한해 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일정 크기(전장200m 이상)의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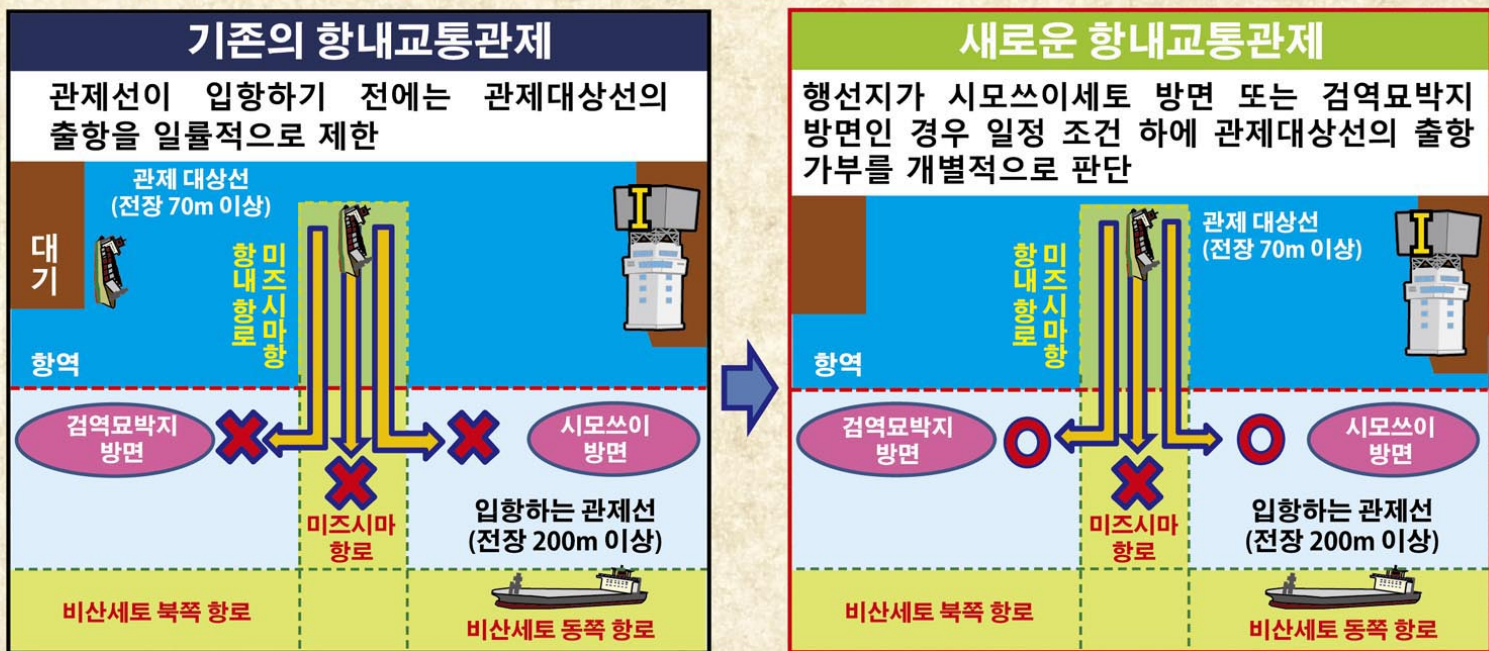
※ 2 관제대상선 : 관제선이 항로를 입출항할 때 항행이 제한(항장이 인정한 선박을 제외)되는 일정 크기(전장 70m 이상 200m 미만)의 선박

관제선이 미즈시마 항로에 입항하기 전에 관제대상선을 출항시키는 관제 (입항신호(I)시의 출항관제)

지금까지는 관제선(200m 이상의 선박)이 비산세토 동쪽 항로 또는 비산세토 남쪽 항로를 경유해 미즈시마 항로를 북쪽으로 항행할 경우 [입항신호(I) 시] 관제대상선(70m 이상 200m 미만의 선박)의 항내 항로의 출항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새로운 항내교통관제는 AIS 정보를 활용해 일정 조건 하에 항장이 인정하고 지시한 관제대상선은 입항신호(I) 시에도 시모쓰이세토 방면 또는 검역요박지 방면인 경우에 한해 항내 항로를 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림3 관제선이 미즈시마 항로에 입항하기 전에 관제대상선을 출항시키는 관제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의 관제대상선의 통항은 다음 조건 하에 실시됩니다.

[공통 사항]

관제대상선의 AIS 정보가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1. 관제선이 유송선(주)이 아닐 것
2. 관제대상선이 입항하는 경우 시모쓰이세토 방면 또는 검역요박지 방면으로부터 입항일 것
3. 관제대상선의 전장 ℓ [m]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시킬 것
 $\ell \leq 800 - 3 \times L$ (L: 관제선의 전장[m])
4.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대일 것
5. 풍속 10m/s 이하, 시정 거리 2,000m 초과, 조류는 1.5노트 이하일 것

항행이 가능한 관제대상선의 길이

관제선	관제대상선
200m	200m미만
210m	170m 이하
220m	140m 이하
230m	110m 이하
240m	80m 이하
243m	71m 이하

[관제선이 미즈시마 항로로 입항하기 전에 관제대상선을 출항시키는 관제]

1. 행선지가 시모쓰이세토 방면 또는 검역요박지 방면일 것
2. 시정 거리가 2,000m를 초과할 것

(주) '유송선'이란 원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된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의 액체를 적재하고 있는 선박 또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 증기를 발하는 물질을 하역한 후 가스 검정을 실시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음을 선장이 확인하지 않은 선박을 의미합니다.

※ 항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통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의 접수 순서

① 관제선 입출항 예정 확인

미즈시마항 항내 항로를 항행하는 관제선의 입출항 예정은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용 URL — <http://www6.kaiho.mlit.go.jp/bisan/index.htm>

휴대폰용 URL — <http://www6.kaiho.mlit.go.jp/bisan/m/index.htm>



휴대폰용 QR 코드

② 신청 방법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에 의한 항행을 희망하는 관제대상선은 다음 방법으로 미즈시마항 항장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경유)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간

【항로 내에서의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행관제】

관제대상선이 항내 항로에 입항하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관제선이 미즈시마 항로에 입항하기 전에 관제대상선을 출항시키는 관제】

관제대상선이 항내 항로를 출항하기 2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

접수 방법

선박에서 직접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877 - 49 - 2220 또는 0877 - 49 - 2221

◇팩스 : 0877 - 49 - 1413 또는 0877 - 49 - 1156

◇VHF : CH16 호출명 '비산 마르티스'

③ 항행 가부 통지

항행 가부 결과는 AIS 메시지 외에 VHF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한 선박에 통지됩니다.

관제대상선은 AIS 메시지 외에 VHF 또는 전화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항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제6관구 해상보안본부 교통부 안전과

우편번호 734-8560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우지나카이간 3-10-17

전화 082-251-5111

미즈시마 해상보안부 항행안전과

우편번호 712-8056 오카야마현 구라시킴시 미즈시마후쿠사키초 2-15

전화 086-444-2967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운용관제과

우편번호 769-0200 카가와현 아야우타군 우타즈초 아오노야마 3810-2

전화 0877-49-5537